

정부,挺身隊배상 청구 가능

법률부의견서 국제법상 「사정변경」... 별도협상해야

1992. 04. 27
1000

법률부는 25일 일제시대
대문제들과 관련, 지
65년의 한일청구권 협
도를 불구, 일본에 대한
문제제거나 새로운
이 가 있다는 의견을
관계부처에 제시했다.
부부는 미야자와 일본
의 방한을 계기로 장

정확된 처분 보상청구문제
에 대한 법적 검토결과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외무부는 인도적
차원의 보상요구와 새로운
법적 문제제기는 곤란하다
는 입장이다. 양측으로
는 입장차이가 커, 양측
부의 최종합의가 어렵다
고 결정될지는 불확실하

다.고 법률부 관계자는 말
했다.
법률부는 의견서에서 정
신대 문제의 경우 한일협
정당시엔 정신대문제가 전
혀 논의되지도 않았고, 그
동안 일본정부는 정신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으나
최근 인종자료가 속속 발
견된 점을 이 국제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
라 법적 재론이 가능하고
결론에 따라선 국제사법재
판소에 제소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부는 또 일본 피해자
사할인, 교포, 재일 한국인
법적지위 문제 등에 대한 선
이에 대해 외무부는 이들

문제는 한일협정의 의해
포괄적으로 일단락된 것으
로 파악하기 때문에 새로
문 법적 문제제기는 어
럽다.는 입장이다.

정신대 문제 한·일 정부 책임 촉구

대책협 공청회 '한일협정 원인무효' 지적 배상청구·진상규명 요구 공개 서한 채택

임 상임이사도 "한·일협정은 피해 당사자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한·일 양국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원인 무효"라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공식사죄하고 △국제관행에 따른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이사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90년 10월29일 회원 22명(군인·군속·유족)이 낸 '공식사죄와 배상지불의무 확인소송' △91년 12월6일 35명(중군위안부 3명을 포함한 군인·군속)이 낸 '공식사죄와 1인당 1천만엔 배상청구소송' △92년 4월13일 6명(중군위안부)이 낸 '공식사죄와 1인당 1천만엔 배상청구소송' 등을 "민족문제인데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정부에 기대지 않고 우리 힘으로 승소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신대 문제의 법률적 책임을 조명한 안상은 변호사와 경희대 김찬규 교수(법학)는 △정신대 문제는 국제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로 보아야 하며, △일본 정부가 정신대 문제에 직접 관련한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가 일본·미국 등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 만큼 배상 등 전후처리에 일본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변호사는 정신대 문제는 증거확보가 어려운 만큼 일본 정부가 진상을 인정하고, 배상을 수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2백여명은 공청회가 끝난 직후 정부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가간 배상청구에 나설 것과 △정신대 진상규명 작업 착수 △일제 징용피해자 생

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채택했다.

한편 공청회에 앞서 한배달연구원 양태진 연구위원이 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종교교회에서 태평양전쟁중 일제에 의해 동원됐던 정신대의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여자정신근로령 시행규칙'을 공개했다. 양 위원은 일본 도쿄대학 도서관에서 입수한 이 시행규칙은 1944년 8월24일자로 공포·시행된 '여자정신근로령'의 하위법령으로, 정신대로 동원된 여성들의 임무 가운데 하나로 '국가 동원상 필요한 위생 또는 구호에 관한 업무'를 들고 있어 일제가 정신대원들을 전쟁터로 동원한 사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중군위안부와 정신대는 별개의 것으로 정신대는 법령에 따라 후방의 군수공장에 동원됐다"고 주장해온 것을 뒤집는 귀중한 자료이다.

〈신연숙 기자〉

강점기에 군인·군속·중군으로 강제연행됐던 41명의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6월1일 도쿄에서 열릴 가운데 한·일 두나라 정부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가 서울에서 열렸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윤정옥 등) 주최로 22일 열린 '정신대 문제와 한·일 책임' 공청회에서 참가자 정신대를 비롯한 일제징용 피해와 진상규명은 피해자보다는 우리 정부가 적극 제대로 이뤄질 수 있고, 상청구소송도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청회에서는 "65년 '한·일협정' 8개항 가운데 11항의 '전쟁에서 희생당한'의 문구 속에 정신대가 있지 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정신대 문제 해결의 실풀릴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전청회생자유족회 양순